



워킹페이퍼 2022-05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김가희
김보영·김지민



■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김지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워킹페이퍼 2022-05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발행일 2022년 8월
발행인 이태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ISBN 978-89-6827-862-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i.2022.05>

발|간|사

우리나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시·도지사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위원회로 도입되었다.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을 통해 시·군·사회복지위원회로 도입된 것에 비하면 20년 앞선 셈이다.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해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관한 독자적 연구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복지 분권 강화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보고서는 김가희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원의 김지민 전문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으며, 김보영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가 외부 필진으로 집필에 참여하였다. 모든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보고서 수행과 관련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최현수 연구위원과 내부 자문위원을 맡아 여러 차례 고견을 나눠주신 함영진 연구위원, 김희성 부연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연구를 위해 유익하고 생생한 자문을 제공해주신 박창제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회장, 강병민 충청북도 청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미숙 경기도 용인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민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박정화 강원도 삼척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유인옥 충청남도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그리고 채현탁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본 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22년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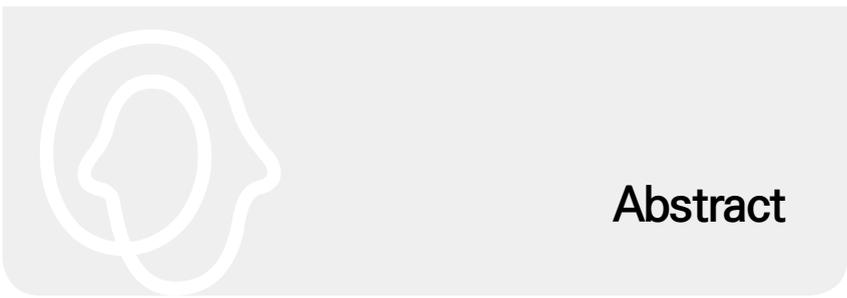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13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15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9
제1절 지방행정과 사회보장에서 시·도의 기능과 역할	21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	38
제3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47
제1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49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61
제4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75
참고문헌	87
부록	91

표 목차

〈표 1-1〉 연구의 구성 체계	18
〈표 2-1〉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1]의 사무배분	28
〈표 2-2〉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차원에 따른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32
〈표 2-3〉 사회보장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37
〈표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40
〈표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대 기능과 역할	41
〈표 2-6〉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45
〈표 3-1〉 조사 개요	49
〈표 3-2〉 전체 조사항목 및 본 연구의 분석 문항	50
〈표 3-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별도 거버넌스 현황	51
〈표 3-4〉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	52
〈표 3-5〉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정기 운영 현황	53
〈표 3-6〉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53
〈표 3-7〉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역할 현황	55
〈표 3-8〉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56
〈표 3-9〉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 내실성	57
〈표 3-10〉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협력(소통) 정도	58
〈표 3-1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 협력 정도	58
〈표 3-1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정도	60
〈표 3-13〉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61
〈표 3-14〉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내용	62
〈표 3-15〉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결과	73
〈표 4-1〉 중앙, 시·도,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개편(안)	79
〈표 4-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81
〈표 4-3〉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85



Abstract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Operation and Tasks for Strengthening the Foundation of Regional Social Security

Project Head: Kim, Kahee

The current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was introduced as Regional Social Welfare Committee to advise mayor/governor, together with Central Social Welfare Committee to advi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he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as enacted in 1970. It preceded 20 years the Si/Gun/Gu Social Welfare Committee, which was introduced by reorganizing the Si/Gun/Gu Regional Social Welfare Consultative Body when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was completely amended in 1993. Despite the history of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however, in-depth discussion has not been made about its function and role, and also it is difficult to find independent studies on the committ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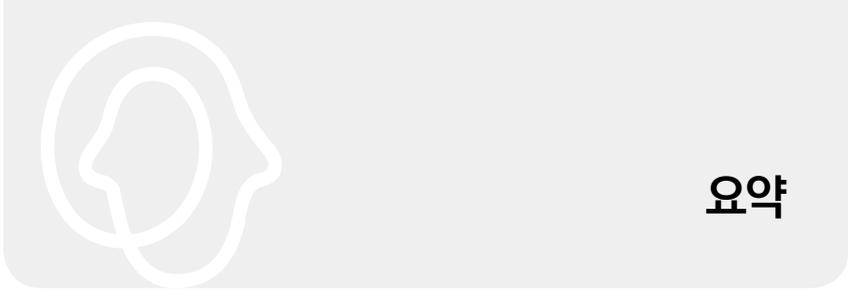
This study starts out of the following awareness of problem: To strengthen the role of broad-area autonomous entities and solidify the foundation for the balanced growth of regional social security from the aspects of strengthening welfare decentralization and enhancing the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Co-Researchers: Kim, Bo-Yung · kim Jimin

2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and enhance its status. With this awareness,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operation and suggests tasks for the activation of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Keyword : City/Do Social security committee, Regional social security, Even Development



1. 필요성 및 목적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위원회로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법 제3조).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관심은 일천했던 것이 사실이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 독자적인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조차 발견하기 힘들다. 복지 분권이나 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에서도 시·도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나 체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역사와 위상에 비해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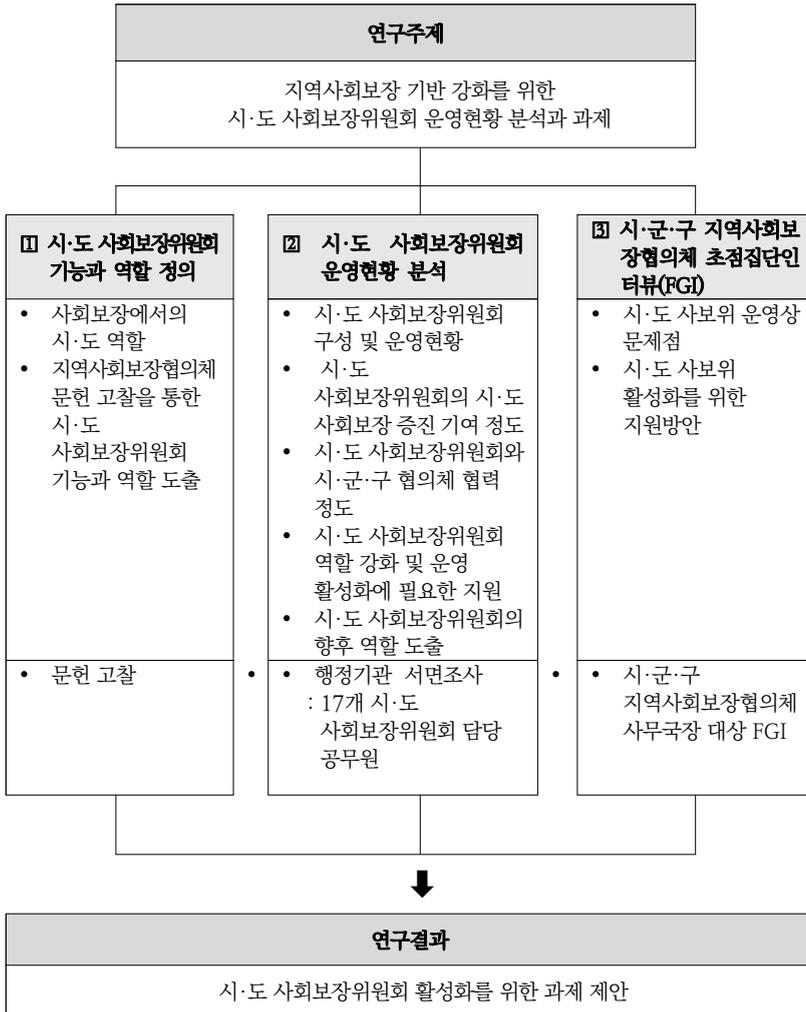
본 연구는 복지 분권 강화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헌고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서면조사 결과분석,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표 1>과 같다.

4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표 1〉 연구의 구성 체계



3. 주요 연구 결과

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기 위해, 우선 지방행정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시·도의 기능과 역할을 자치행정 효율성의 차원, 지역간 조정의 차원, 지역의 정책참여 거버넌스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세 가지 차원에 따라 지방자치법상의 광역 지자체의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리하고, 사회보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였다.

〈표 2〉 사회보장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차원	사회보장에서의 기능과 역할
자치행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사회보장정책의 총괄 및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추진 • 기초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
지역 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등의 자원과 인프라의 배분 • 사회보장사업의 기초 지자체 간 조정과 연계·협력 •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지역의 정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초 지자체간 정책협의 • 지역 욕구의 공공 재정 반영 창구 • 시·도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

또한 김희성(2020: 95~97)이 제안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세 가지(협력적 연결망 강화·확대, 수요자 중심 거버넌스 기획·실천,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기능을 재정리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협력의 구심점 측면을 고려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을 협력적 연결망 구축과 협업 기능, 지역 욕구 진단 및 지역 간 조정 기능, 기초 지자체

6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전달체계 지원 기능 세 가지로 도출하고 이에 대한 역할을 설정하였다.

〈표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협력적 연결망 구축과 협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연결망 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진단과 협의 • 사회보장 영역별,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시·도 사업반영 • 시·도 단위 사회보장 의제 설정과 협력적 대응 활성화
지역 욕구 진단 및 지역 간 조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회보장 욕구 파악 및 수요 진단 • 기초 지자체간 사회보장사업 연계·협력과 조정 • 시·도 단위 사회보장사업 개발과 욕구 대응 •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촉진
기초 지자체 전달체계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전달체계간 연계체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업과 인력에 대한 전문성 지원 • 시·도 단위 사회보장영역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 시·도 단위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역 간 공유

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7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분석한 결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역할을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제외하면, 시·도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근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기보다 필요에 따라 지역 조례에 근거 별도 거버넌스(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17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모두가 예산을 지원받거나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나, 시·도 간 평균 지원 예산액은 시 지역이 도 지역 보다 약 9배 높게 나타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평균 운영 횟수는 시 지역이 도 지역 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났으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또한 시 지역에 비해 도 지역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전반적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원 정도가 저조하며, 지원에 있어 시·도 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비롯한 거버넌스 기구들은 지역이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대상별·영역별로 분절된 서비스를 사회보장 전달체계에서 연계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주민 참여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기제이다(정홍원 외, 2021: 189). 따라서 시·도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운영 및 시·도 중간 지원 조직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정홍원 외, 2021: 189).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50대 이상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전문성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 편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3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등의 구성이 평균적으로 고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민간위원의 77.9%가 대표·기관장과 교수로 구성된 것과 그 결을 같이 한다. 그러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도 단위에서 학계, 공급자, 이용자와 주민, 관내 지역의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모두 함께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위원 구성이 대표, 기관장, 교수에 편중되고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며 개선이 요구된다.

8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이 20.6%, 1~2년 미만이 약 10.4%, 2~4년 미만이 51.5%, 4년 이상이 17.5%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와 시·도 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를 고려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연임 임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로, 현재 17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평균적으로 2년 미만으로 활동한 비중이 31%, 1회 연임한 비중이 51.5%, 2회 이상 연임한 비중이 17.5%로 분석된다.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2항에 대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으로 기여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는 전반적으로 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또한 시 지역 공무원이 도 지역 공무원보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실 있게 역할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여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내실성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 협력 현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력(소통) 정도는 전국 평균 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세부 응

답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 모두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담당자 간의 협력(소통) 정도는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 수준은 3.1점으로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소통) 수준보다 더 낮았으며,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4)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파악한 결과 평균적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침(매뉴얼 등) 배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 지역과 도 지역의 항목별 필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침(매뉴얼 등)을 배포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도 지역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 중 하나이나,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FGI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10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중 본 과제의 취지와 인터뷰에 동의한 총 6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인터뷰 내용은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총 2개 대주제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 부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운영 근거 부족의 총 3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확대와 예산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체계 개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지침 마련 총 3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표 4〉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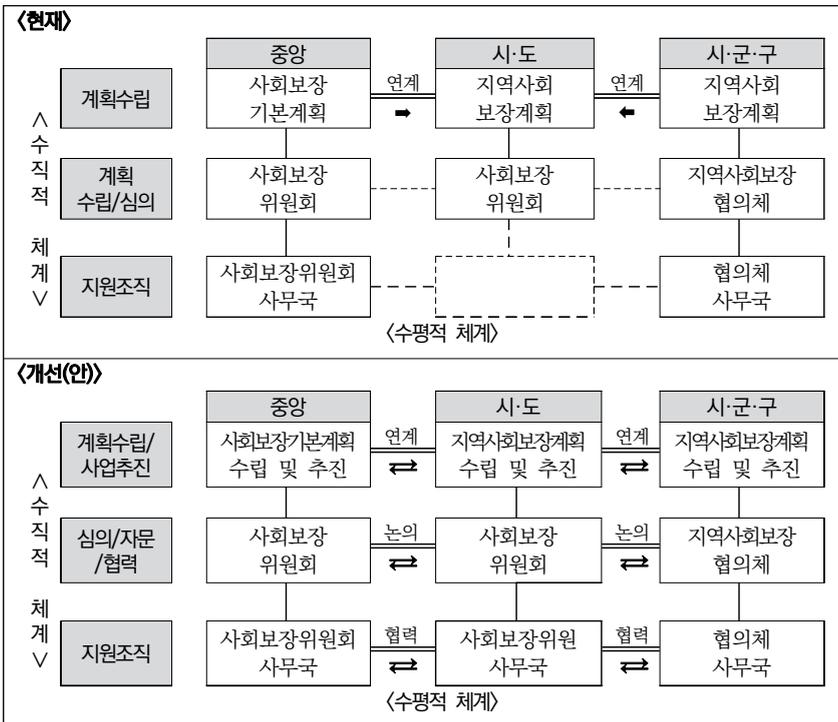
대주제	하위주제	비고
시·도 사보위 운영상 문제점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 부재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운영 근거 부족	
시·도 사보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확대와 예산지원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체계 개편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와 운영지침 마련	

4.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개편이다. 법에

근거하여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사회보장 거버넌스를 만든 점은 그간의 성과이나, 이들의 유기적 연계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1) 수직적 체계에 있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보완 2) 중앙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업 및 소통을 위한 논의 체계 구축의 두 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표 5〉 중앙, 시·도,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네트워크 개선(안)



둘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분석 결과 사회보장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동하기보다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본 연구 제2장에서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였는데,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기능과 역할 강화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셋째,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재검토가 필요하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처럼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나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중앙-시·도-시·군·구의 연계·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5항에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비와 경비에 대한 지자체별 해석에 차이가 발생하여 조직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지자체 공통 의견이다. 또한,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대표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실무위원회 실무협의체 등 분과가 상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이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는 실행을 도울 수 있는 운영체계도 부재하다. 이를 근거로 시·도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관계 법령 재검토를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제2항에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따르면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사회보장조사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급여 제공과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중요 사항 등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그 구성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사회보장 대상자의 대표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 민관을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의 관계자들을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즉, 시·도 단위에서 학계, 공급자, 이용자와 주민, 관내 지역의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모두 함께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위원회는 기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당시 시·도 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사회복지위원회로 당시 보건사회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중앙사회복지위원회와 함께 처음 도입되었다(법 제3조). 시·군·구에는 1993년 사회복지사업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처음 사회복지위원회가 도입되었으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보다 그 역사가 20년 이상 먼저였던 셈이다.

하지만 그 역사에 비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관한 관심은 일천했던 것이 사실이다.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군·구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발전하면서 큰 관심을 받아왔고 최근까지도 김희성 외(2020), 김종건(2017), 조민호(2019), 함철호(2015) 등을 통해 독자적인 주제로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독자적인 주제로 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는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시·도 광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조차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복지분권이나 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논의에서도 시·도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나 체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그 역사와 위상에 비해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져 오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복지분권 강화 및 지자체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사회보장 균형발전 기반을 견고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 강화 및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이런 문제의식 하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헌고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서면조사 결과분석,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Focus Group Interview) 결과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 제안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관한 문헌 고찰에서는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모색을 위한 사회보장에서의 시·도의 역할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다음 그동안 그나마 연구가 이루어져 왔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서 이를 시·도 광역 지자체의 역할에 투영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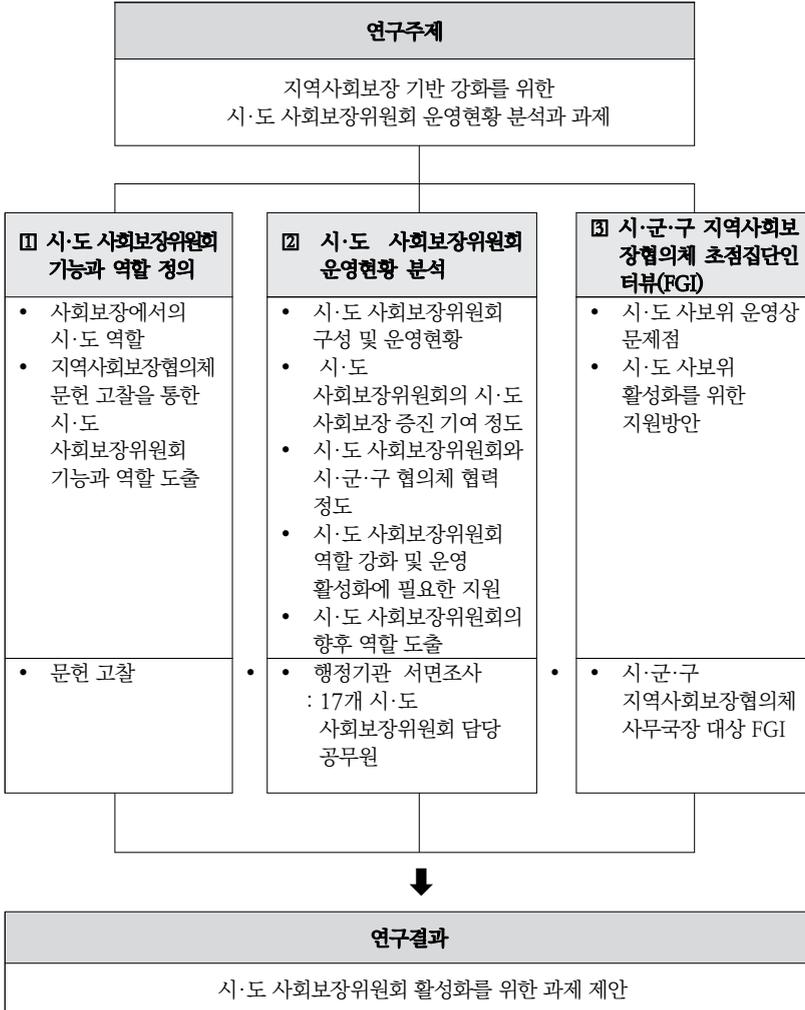
둘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서면조사 분석에서는 17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공무원을 통해 조사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 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향후 역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셋째,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는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사무국장 6명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및 어려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지원방안, 중앙·시·도·시·군·구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개선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넷째, 결론에서는 앞서 수행된 문헌 연구, 서면조사,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보장 기반 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18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표 1-1〉 연구의 구성 체계





제2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1절 지방행정과 사회보장에서 시·도의 기능과 역할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도 사회보장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제 2 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

제1절 지방행정과 사회보장에서 시·도의 기능과 역할

1. 지방행정체계로서의 시·도

우리나라에서 지방행정체계로서의 시·도의 역사는 매우 깊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의 구역과 계층의 뿌리는 995년 고려 성종 때부터 기원하였고, 조선조 초기인 1413년 조선 태종 시기에 강력한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8도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1896년 고종 때 8도 체제를 확대개편하여 현재와 유사한 13도 체제를 갖추어 지금까지 100년이 넘게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허훈·강인호, 2008: 51, 이기우 2009: 117).

이렇게 역사가 오래된 시·도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는 시·군·구의 기초 지자체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2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자치 실시 이전에는 관할구역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시·도의 존재는 중앙정부가 전 국토를 직접 관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간에 광역적인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계층구조로서 존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2층 구조는 중앙집권적 체계 아래에서 전국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수직적 체제였던 셈이다.

하지만 지방자치 이후에는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나 독립적인 법인격으로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있어서 주민과 가장 근접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질

적인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공간은 광역이 아닌 기초 지자체라고 인식되고 있다(김병국 외, 1998). 지방자치 부활 이후 복지지출에 있어서 광역보다는 기초지자체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강운호(2000: 366)의 분석에 따르면 광역시의 경우 사회복지지출의 비중이 자치구가 광역 지자체보다 높으며, 그 격차는 지방분권 이후 더욱 커지고 있었으며 도의 경우는 분권 이전에는 기초 시군보다 복지지출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크게 나타났지만 민선 이후에는 역시 시군의 복지지출비중의 증가로 인하여 도와 시군간의 격차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관계에 있어서는 모호함이 여전히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전에는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관계는 전국적 관리·통제 아래에서 수직적 관계가 매우 분명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부활로 인해 광역 시·도와 기초 시·군·구가 각각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단체장을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하게 되면서 광역과 기초 지자체는 모두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게 된 수평적 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수직적 관계가 아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제165조의 분쟁조정, 제185조 위임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190조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등 시·군·구에 대해서 시·도가 1차적인 조정, 지도·감독, 감사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으로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에 해서 지휘·감독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상 상호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조정, 감독, 감사 등의 영역에서는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시·도와 시·군·구의 수직적 관계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시·도와 시·군·구간 기능중복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법상의 사무구분에서 표현이나

규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통일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주운현·임정빈, 2021: 187). 개별 법률에서도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등 명확하게 주체를 명시하고 위임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구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기초 지자체의 경우 일선 자치기관으로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에서의 역할이 드러나지만 일선 자치기관도, 중앙정부도 아닌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능과 역할의 모호성이 더욱 크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지방행정에서 시·도의 기능과 역할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행정학계에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지자체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었지만 관심의 초점이 기초 지자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나마 광역지자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2008년 제기된 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방안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정치권에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1980년대부터 간헐적으로 제기되었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하였는데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면서 당시 야당이 맞대응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들고 나오면서 본격화 되었다(안성호, 2010: 8).

이 때에는 정치권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려다가 전문가들의 반대로 유보되었고, 이명박 정부 때 이번엔 민주당이 도를 폐지하고 시·군·구 자치구를 6~70개 통합광역시로 재편하는 안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었다(안성호, 2010: 8).

이때 당시 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등 다양하게 정치권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주장하였는데 공통점은 도를 폐지하고 시·군을 통합하는 것이었다(이기우, 2009: 119).

이렇게 광역 지자체 폐지 주장이 정치권에서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행정체계에서는 광역 지자체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정호, 2009; 유재원, 2002; 이기우, 2009; 허훈·강인호, 2009). 이러한 논의를 정리하자면 광역 지자체의 필요성은 자치행정의 효율성 차원, 지역간 조정의 차원, 지역의 정책참여 거버넌스 차원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강인성, 2007: 8~10).

가. 자치행정의 효율성 차원

우리나라의 2층제 구조에서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기능이나 기초 지자체의 범위를 넘어선 주민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 점차 주민들의 생활과 경제활동의 범위가 단순하게 지자체의 행정구역 범위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역할은 더욱 증대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혁안의 경우 기초 지자체 단위를 넘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감당해야 하므로 과부하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한다(이기우, 2009: 128).

따라서 광역 지자체는 일선 시·군·구 차원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기능, 시·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에 대한 기능, 시·군·구가 모두 개별적으로 수행하여서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중복과 비효율이 큰 기능 등을 광역 차원에서 수행함으로써 더욱 효율적인 자치행

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인접 기초 지자체 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운영을 광역 지자체가 담당하는 경우 불필요한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기초 지자체간 협력을 통하여 낮은 비용으로 높은 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기초 지자체 단독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등 더 나은 행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강인성, 2007: 8; 권자경·김익식, 2012: 25).

나. 지역간 조정의 차원

지방자치에서 일선 기초 지자체가 각자 개별적으로만 존재하게 되면 지역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발생하는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기가 어렵게 된다. 지역별로 격차 문제에 대한 상황과 맥락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중앙정부가 모두 조정한다는 것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범위 수준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중앙정부의 지자체에 대한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기초 지자체마다 인구의 규모와 구성, 주거환경, 산업구조가 모두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조건을 중앙정부가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광역의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 간 조정도 필요하고, 도시와 농촌 지역이 있을 때 각자 서로 다른 인프라와 지역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 간 상호역할이나 기능 배분의 측면에서도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조정은 단순한 배분적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협력적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이 된다. 특히 각자 독립적인 기초 지자체 간의 경쟁과 갈등 관계로 인한 소모적 경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상호간의 비교우위를 서로 활용하고 상호보완하는 협력과 발전적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권자경·김익식, 2019: 24;

강인성, 2007: 9). 이러한 수평적 조정과 협력관계는 광역 지자체로서 관내 기초 지자체 간에만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과 광역 간의 관계에서도 구축될 수 있다.

다. 지역의 정책참여 차원

더이상 중앙통제적인 지방행정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의한 행정이 이루어지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중앙의 지방에 대한 관리·감독을 넘어선 지역의 중앙정책에 대한 참여와 협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모든 시·군·구 지자체와 모두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협의나 협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의 중간자적 역할이 긴요해지는 것이다. 광역 지자체를 통해 중앙정부는 일선 기초 지자체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반대로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를 매개로 한 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하여 집합적으로 중앙정부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고, 상호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정책참여 기능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광역 지자체의 존재는 중앙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분립이 상호견제를 위한 수평적인 권력분립이라면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상호견제를 위한 수직적인 권력분립이라는 것이다(유재원, 2002: 124). 만약 광역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규모나 범위가 현저하게 작은 기초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간섭에 대하여 자율성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지적한다(이기우, 2009: 128).

3. 기초 지자체와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구분

가.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 규정

이상과 같이 지방행정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차원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은 사무배분으로 나타난다.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의 원칙은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는 원칙적으로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로, 시·군 및 자치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시·도의 사무로, 시·도가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는 각기의 사무로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제11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한다면 사무배분에 최우선은 기초 지자체로, 그 다음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 광역 지자체, 그 다음 국가 순으로 사무가 배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제도적 구속력은 거꾸로 작동하고 있다. 동법에 규정한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며, 시·군 및 자치구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를 위반하여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제12조 제 3항)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무배분에는 시·군·구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만 법제도상 사무에 대한 권한은 국가와 시·도가 정하는 범위 내에 한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실상 보충성의 원리가 사무배분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특히 시·도의 사무배분 내용은 시·군·구의 사무와 유사성이 크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사무를 구분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면 시·도의 상당수 사무는 시·군·구 사무와 중복된다. <표 2-1>에서 보이듯이 시·도의

사무로 40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25개의 사무가 시·군·자치구 사무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60% 이상의 사무가 중복되어 있는 것이다. 보충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러한 중복된 사무의 우선적 처리는 시·군·자치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이는 그만큼 시·도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1]의 사무배분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2) 시·군·자치구에 공통 되는 복지업무의 연계·조정·지도 및 조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 2) 시·군·자치구 단위 주민복지 시설의 운영·지원 3) 주민복지 상담 4) 환경위생 증진 등 주민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수요 판단과 지역별 배치 등 기본계획의 수립 2)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3) 사회복지법인의 지도·감독 및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및 승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사회복지시설 수혜자에게 비용 수납 3)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보조 및 지도 4) 사회복지법인 등의 시설 설치 허가와 그 시설의 운영 지도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 실시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 2)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3) 시·군·자치구에 대한 생활보호 보조금 지급 4)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 관리 5) 의료보호진료 지구의 설정 6) 의료보호시설의 지정 7)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선정 2) 생활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3) 생활보호의 실시(생업자금대여, 직업훈련, 공공근로사업, 수업료 지급, 장례보조비 지급 등) 4) 생활보호비용의 일정액 지원 5) 생활보호대상자의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 징수 6) 생활보호기금의 적립 및 운용 관리 7) 생활보호의 변경과 중지 8) 의료보호대상자 관리와 의료보호의 실시(진료증 발급 등) 9) 의료보호기금의 설치·운용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p>노인</p> <p>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조정 2)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3)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p>	<p>1)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2) 노인복지사업의 시행 3) 경로행사 등 경로사업의 실시·지원 4)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p>
	<p>아동</p> <p>4) 아동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5)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6) 아동전용시설의 운영 7) 아동보호조치 8)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9)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p>	<p>5)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시행 6)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 7) 아동전용시설의 운용 8) 아동보호조치 9)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지원 10)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 11)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인 지정</p>
	<p>장애인</p> <p>10) 장애인복지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11)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2) 장애인의 고용 촉진 13)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권고 14)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p>	<p>12) 장애인복지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13) 장애인의 파악·관리 14) 장애인의 검진, 재활상담과 시설에의 입소 15) 장애인의 고용 촉진 16)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도 17)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p>
	<p>청소년</p> <p>15) 청소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16)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17) 시·도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18)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19)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 20)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21)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22) 청소년복지 지원</p>	<p>18) 청소년사업계획 수립·시행 19) 청소년보호 조치 20) 청소년복지 지원 21)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22) 시·군·자치구 단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23)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24) 청소년의 달 행사 추진</p>
	<p>여성</p> <p>23) 양성평등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24) 모자보건사업계획의 수립·조정 25) 여성단체 육성·지원 26)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p>	<p>25) 양성평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26) 모자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시행 2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운영 28) 모자보건대상자의 선정(수첩</p>

30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시·도 사무	시·군·자치구 사무
	27)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의 발급 등) 29) 임신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 30) 여성교실 운영 및 여성 교육 31) 여성단체 육성·지원 32) 여성복지시설의 운영·지원 33) 성매매피해자 등의 선도 및 직업교육·지원

주: 밑줄 표시는 상호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무

이렇게 시·도와 시·군·구 간 명확한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기보다 서로 유사한 사무가 많아 발생하는 모호성으로 인해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불경합의 원칙에도 불구하고(지방자치법 제11조 제1항) 서로간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제이, 2013: 58). 그리고 서로 경합하는 사무에 대해서 시·군·구가 먼저 처리한다는 보충성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제 사무수행에 있어서는 광역 지자체가 기초 지자체를 하급기관화하여 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조성규, 2013: 31).

나. 광역과 기초 지자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현행 법제상 시·도와 시·군·구 간에 명확한 기능과 역할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상의 사무배분 기준도 서로 유사하여 경합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법률에서도 국가, 시·도, 시·군·구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기 보다는 모호하게 표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법제상으로 구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칙적인 사무배분 기준을 다시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현행 법제상

명시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다 명료한 사무배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실질적 기능과 역할 구분을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행정학계에서도 이렇게 광역과 기초의 사무배분 기준을 재정립하려는 연구들이 있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기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표방했던 것이 다시금 사무배분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중 특히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사무배분 기준을 다룬 한부영·박재희(2009)의 연구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수행한 국가사무 총조사 결과와 대표 법령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하여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주운현·임정빈(2012)의 연구에서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 사무배분에 대해서 효율성과 민주성,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편익과 비용부담 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사무배분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들에 의해 광역 지자체의 배분 원칙과 기준은 앞서 살펴본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세가지 차원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치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거나, 하나의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부적당한 사무,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사무,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사무, 시·도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무 등을 들 수 있었다.

또 다른 차원의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은 지역 간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필요로 하거나, 관할 시·군·구간 조정이 필요한 사무, 그리고 일부 시·군·구에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등은 시·도의 사무로 적합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참여 차원으로 이는 국가와 기초 지자체 간의 연락조정이나 통합, 평가와 관련된 사무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해보면 <표 2-2>와 같다.

32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표 2-2〉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차원에 따른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차원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자치행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 시·군·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 •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 시·군·구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 시·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 또는 집행적 사무 • 주민 대응성 측면에서 시·도가 행·재정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무
지역 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 시·도 관할의 시·군·구간 조정에 관한 사무 • 행정수요 특성에 의해 시·군·구별 업무량이 편중된 사무
지역의 정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통합·평가 사무

주: 주운현·임정빈(2012)의 〈표1〉, 한부영·박재희(2009)의 [표 5-28]을 종합하여 재정리

4. 사회보장의 정부간 사무배분

가. 사회보장에서의 지방분권과 정부간 역할 분담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가 된 계기는 2003년부터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지방분권이였다. 이 당시 선 지방이양 후 존치사업 선정방식으로 대대적인 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사무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박병현, 2006: 13). 하지만 이러한 지방이양이 개별적인 단위사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인 분권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금창호·박기관, 2012: 7; 안영훈, 2009: 152;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29). 일관성이 없는 기준에 의해 개별 단위사무 중심 이관으로는 제대로 역할이나 권한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고, 이렇게 이

관된 업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아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었다. 기본적으로 지역적 인접성과 현지성이 강한 사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무들이 지자체의 사무라고 할 수 있는데 복지사무가 그 전형적인 분야라는 것이다(홍석한, 2020: 8). 이미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지자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와 같은 가장 기초적인 행정 사무를 제외하고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가장 첫 번째 지자체의 사무범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3조 제2항).

이러한 가운데 그 다음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촉발된 것은 201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사전협의제를 근거로 2015년에 추진되었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유사·중복사업 정비가 추진되면서였다. 위와 같이 헌법을 비롯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주민 복지를 지자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심의절차 규정과 일방적인 개입은 자치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낳았고(이찬진, 2017), 유사·중복사업 정비는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하였다(남찬섭, 2016: 154).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협의·조정 제도나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정비사업은 사회보장에서 지자체의 역할이나 지역중심의 사회보장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김보영, 2021: 74).

하지만 그렇다고 사회보장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까지 지역의 사회보장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보장정책은 지자체

에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이재완, 2016: 90). 또한 반대로 지자체 역시 주민을 위한 복지사무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재정과 인프라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협의제도를 중앙과 지자체 간의 협력기제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제도가 국가의 지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간의 협력과 조정이 될 수 있고, 지자체의 의사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반대로 자치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임형종·김남철, 2021: 390). 또한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제정되는 등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수직적 관계보다는 보다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하려는 법제적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나. 사회보장에서 시·도의 역할

이미 서두에 밝힌 바와 같이 사회보장분야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지자체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고, 그 초점은 사실상 기초 지자체였다. 따라서 지자체 중에서 광역 지자체와 기초 지자체간의 역할구분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나마 찾아볼 수 있는 연구는 최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을 제안하면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을 언급하는 정도이다. 가령 이태수 외(2019)의 연구에서는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면서 광역 지자체 단위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국(시)나 사회서비스과(도)를 두고 사회서비스영역별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시·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희성 외(2020: 211~212)는 복지부분 민관협력 혁신방안을 연구하면서 광역 지자체에서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이양받고, 평가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평가기준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가 인력풀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시·도의 사회보장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 지방자치와 행정에서의 시·도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앞서 정리해보았던 시·도의 자치행정의 효율성 차원, 지역 간 조정의 차원, 지역의 정책참여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에 있어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설정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주로 국가 책임사무로 적합하다고 인식되는 현금보조 중심의 소득보장과 달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고제이, 2013: 62~63) 이러한 맥락에서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지방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살펴보면 광역 지자체는 시·도 단위 사회보장정책의 총괄 및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추진, 기초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 등을 말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의 관할 지역범위를 넘어서는 등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하기 부적합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광역 차원의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고, 광역 차원에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기능과 역할이 필

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차원이나 보편적인 기본권 보장, 인권보호, 안전 등 전국적 차원에서 일정 수준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이나 서비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가 직접 전국 시·군·구를 상대하기보다는 시·도 지자체가 관할 지역의 시·군·구에 대해 지도·감독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평가를 통해 관리하는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군·구의 경우 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시·도 자원에서 이를 보완하고 컨설팅, 교육·훈련 등 지원하는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 지역 간 조정의 차원에서 보면 특히 사회보장영역에서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사회보장 영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이므로 이에 대한 시·도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산 등의 자원과 인프라의 배분, 사회보장사업의 기초 지자체 간 조정과 연계·협력,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재정체계에 있어서 지자체의 자체재원 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할당하는 몫이 크기 때문에 광역 지자체는 기초 지자체 간의 욕구와 지역적 환경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여 적절하게 배분해야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공급 인프라 역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이 역시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행정에서처럼 일부 기초 지자체에 업무 등 부담이 편중되거나 지역간 역할의 조정이나 연계, 협력이 필요한 경우 광역 지자체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관내 기초 지자체간 협력 뿐 아니라 인접 시·도 차원의 연계와 협력 역시 시·도에서 수행해야 하는 기능 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정책참여 차원에 있어서는 중앙-기초 지자체간 정책

협의, 지역 욕구의 공공 재정 반영 창구, 시·도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 등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시·도는 중앙의 정책이 시·군·구로 전달되는 통로임과 동시에 반대로 시·군·구의 정책적 요구나 의견이 중앙으로 전달될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중앙정부와 시·도 지사가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법제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지역적 욕구의 특수성이 큰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는 국가가 일관된 기준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지역에서 진단된 욕구가 국가 예산 등 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핵심적일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에서는 지자체 뿐만 아니라 공단 등 별도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많고,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는 민간영역의 역할이 크며,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시·도 차원의 거버넌스 운영의 필요성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보장에서의 시·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사회보장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의 차원	사회보장에서의 기능과 역할
자치행정의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사회보장정책의 총괄 및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추진 • 기초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 정책과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지원
지역 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등의 자원과 인프라의 배분 • 사회보장사업의 기초 지자체 간 조정과 연계·협력 •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지역의 정책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초 지자체간 정책협의 • 지역 욕구의 공공 재정 반영 창구 • 시·도 차원의 민관 거버넌스 운영

자료: 문헌 검토를 통해 연구자가 정리함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도입과 확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000년 보건·복지 기능연계 모형연구를 통해 검토가 시작된 이후 2001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근거가 마련되면서 전국 시·군·구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조민호, 2019: 83). 2005년 7월부터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단위에서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과 민간의 협의구조가 구축된 것이다. 특히 당시 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이 추진되던 중에 이루어져서 지방분권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의 확대라고 평가되기도 하였다(김창기, 2007).

이렇게 도입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15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면서 지금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확대·재편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던 관련 규정이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이관되면서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의 정의에 따라 사회복지뿐 아니라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문화, 환경으로 영역이 확대되었고,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생활권 단위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도 확장되었다(김희성 외, 2020:

50~51).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도 지역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주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하는 소극적 기능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주도적 역할로 기능이 확대되고, 인력구성의 규모도 40명 이하로 늘어났으며 인력 및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되었다(박선희·김수영, 2017: 157). 새롭게 추가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지역사회 안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적안전망으로서의 기능으로 사회보장자원의 발굴·연계, 지역특화사업 수행, 사례관리 지원 등의 역할이 부여되었다(최향순, 2020: 59).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사회보장급여법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제 41조 제1항)하기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21: 15~37)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를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대표 협의체에는 시·군·구 대표를 포함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이용·생활 시설 대표, 의료·정신보건·경찰·소방 등 연계영역 대표,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인, 사회보장 전문가 등 다양한 민관분야의 대표급 인사로 구성하도록 한다. 또한,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는 동 분야의 실무자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읍면동 협의체는 공무원, 주민단체 회원, 종교기관 관계자, 전문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하도

록 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대표협의체 소속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기관·단체 대표가 약 45%, 관계 공무원이 약 20%, 비영리 단체 추천자가 약 15%, 학계 전문가가 약 7% 순이었으며, 실무협의체의 경우에도 약간의 구성 비율의 차이는 있어도 이와 같은 구성 비중 순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김희성 외, 2020: 34).

보건복지부는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목적으로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수요자 중심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기반 마련,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마련,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 등을 들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3~4). 지역 사회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이 함께 참여하여 통합적인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성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하면서 지역의 복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적인 운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사각지대와 민간자원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협치 기능, 연계 기능, 통합 기능으로 구분하여 <표 2-4>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2-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주요 기능	내용
협치(governance)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정·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적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행
통합(integrate)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및 기본사업 수행·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자료: 보건복지부(2021: 22)

김희성 외(2020: 95~97)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운영 지침과 사회보장 급여법상 협의체의 법적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3대 기능을 협력 네트워크 측면, 서비스 측면, 기반 조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 협력적 연결망의 강화·확대,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실천,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3대 기능별 성과와 혁신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기능별 역할을 정리해보면 <표 2-5>와 같다.

<표 2-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대 기능과 역할

3대 기능	역할
협력적 연결망 강화·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주체 간 연결망 형성 • 참여 주체의 의견 수렴 및 사업 반영 • 공공·민간의 대등한 협력관계와 신뢰·연대감 구축 • 사회보장 의제의 다양화 및 문제 해결 활동 활성화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화된 욕구의 파악과 이해 증진 •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 개발 • 복지수요자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다양화 • 복지수요자의 복지 체감도 및 편익 증가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 사회보장 영역 간 연계 서비스 강화와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 복지 사각지대 예방과 대응 • 지역사회 자원 개발·관리

자료: 김희성 외(2020: 97 <표 3-15>에서 재정리

협력적 연결망 강화·확대 기능에서는 참여 주체 간 연결망을 형성하고, 참여 주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에 반영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 및 신뢰·연대감을 구축하고, 사회보장 의제를 다양화하면서 문제 해결 활동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수요자 중심 서비스 기획·실천 기능에서는 수요자 관점에서 개별화된 욕구를 파악하고 이해를 증진하면서 복지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특화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면서 복지수요자의 복지 체감도 및 편익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맞춤형 전달체계 강화 기능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보장 영역 간 연계 서비스를 강화하면서 공공협력 사업을 활성화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자원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과 역할의 설정

사회보장급여법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규정을 보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시·도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시·도의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한다고 하고 있다(제40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해서 사회보장 전문가,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자,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비영리 민간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사회보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제 40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본질적 차이는 없다. 결국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차이를 갖는 지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초 지자체 단위이고 사회보장위원회는 시·도 단위로 구성·운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앞서 지방행정에서 시·도의 기능과 역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본질적인 성격의 차이를 만들어

낸다. 기초 지자체는 실질적인 자치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직접 주민을 상대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지만 시·도는 그러한 위치도 아니면서 중앙정부도 아닌 중간적 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첫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 협력의 구심점으로서의 측면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시·도 단위의 다양한 기관·법인·단체의 대표자, 사회보장 연계 영역의 대표, 비영리 단체 추천자, 사회보장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협치, 연계, 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광역 지자체 단위로서의 측면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사회보장 급여를 제공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포괄하여 직접적인 사각지대와 민간자원 발굴 역할을 수행하지만 시·도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지방행정과 사회보장에서 광역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행정의 효율성, 지역 간 조정, 지역의 정책참여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이 두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도출해보면 <표 2-6>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우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협력적 연결망 강화·확대, 협치의 기능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시·도 단위의 협력적 연결망 구축과 협영 기능으로 설정해볼 수 있다. 다양한 민관의 연결망 형성과 협력관계를 시·도 단위에서 구축하면서, 사회보장 영역별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 사업에 반영하고, 시·도 단위로 사회보장 의제 설정과 협력적 대응을 활성화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광역 지자체의 협력기구로서 기초 지자체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진단과 협의 또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다. 수평적 협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수직적 개념을 담고 있는 협치가 아닌 협의의 개념(김보영, 2013: 116)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는 지역의 욕구 진단 및 지역 간 조정 기능이다. 시·도 단위에서는 주민에 대한 개별적 욕구 파악이나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차원의 욕구 파악과 대응이 더욱 중심적인 역할이 된다. 따라서 지역별 사회보장 욕구 파악과 수요의 진단, 시·도 단위의 사회보장사업 개발과 욕구 대응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동시에 지역 간 조정의 차원에서 기초 지자체간 사회보장사업의 연계·협력과 조정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도 단위의 협력기구로서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을 촉진시키는 것 역시 역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달체계 부분에 있어서는 일선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전달체계의 종합·연계될 수 있도록 시·도 단위의 연계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가령 기초 단위에서 건강보험공단 지사, 교육지청, 경찰서 등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시·도 차원에서 건강보험지역본부, 시·도 교육청, 시·도 경찰청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영역간 공동협력사업 역시 시·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사회 자원개발도 시·도 차원에서 추진하면서 동시에 지역 간 공유도 역할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과 단체, 전문가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전문성을 다양한 협력, 컨설팅, 교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 역시 필요한 역할이다.

〈표 2-6〉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협력적 연결망 구축과 협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연결망 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진단과 협의 • 사회보장 영역별,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시·도 사업반영 • 시·도단위 사회보장 의제 설정과 협력적 대응 활성화
지역 욕구 진단 및 지역 간 조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회보장 욕구 파악 및 수요 진단 • 기초 지자체간 사회보장사업 연계·협력과 조정 • 시·도 단위 사회보장사업 개발과 욕구 대응 •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촉진
기초 지자체 전달체계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전달체계간 연계체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업과 인력에 대한 전문성 지원 • 시·도 단위 사회보장영역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 시·도 단위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역 간 공유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제1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제 3 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제1절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분석

1. 조사 개요

본 절에서는 17개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 담당 공무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운영 및 활성화 현황 조사는 17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추진 계획 안내' 공문의 붙임자료로 17개 시·도 담당자에게 발송되었으며 각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는 수신한 조사표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 이메일로 회신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2년 5월 19일부터 6월 3일까지이고,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은 2022년 6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이상의 조사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17개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조사방법	공문으로 수신한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식 이메일로 회신
조사기간	2022.5.19.~2022.6.3. (검토 및 보완 기간: 2022.6.4.~2022.6.30.)

50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전체 조사 항목은 시·도 담당자(조사대상자)의 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 점검, 계획수립 및 집행 점검, 시·도의 시·군·구 지원 체계 점검, 지역사회보장 통계 관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이다. 이 중 본 연구에 활용된 항목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영역이다. 전체 조사 항목 및 본 연구에 활용된 항목과 그 세부 문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2〉 전체 조사항목 및 본 연구의 분석 문항

구분	내용
전체 조사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 점검 컨설팅 반영 ② 계획수립 및 집행 점검 ③ 시·도의 시·군·구 지원 체계 점검 ④ 지역사회보장 통계 관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연구 활용 항목 및 세부 문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사보위 설치시기, 시·도 사보위 사무국 설치 여부 및 설치 시기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외에 별도의 거버넌스(협의기구)가 설치여부 및 명칭 - 시·도 사보위 예산 지원 여부 및 예산액, 정기적 운영 여부 및 횟수 -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활성화 계획 구체성(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위원 구성 현황 - 시·도 사보위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5개 문항 각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심의자문 내실성(1개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정도 (7개 문항 각 필요정도 5점 리커트 척도 및 우선순위. 단, 기타는 자율기입) - 시·도 사보위 담당자와 시·도 사보위의 협력(소통)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지원) 수준(5점 리커트 척도) - 향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로 부여되었으면 하는 점 (자율기입)

2. 분석 결과

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한 지역은 세

중특별자치시 1개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는 읍·면·동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사하므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외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아니지만, 사회보장 관련 별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은 2개 시(서울시, 광주시), 1개 도(경기도)로 나타났다.

즉, 17개 시·도 중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또는 자체적인 거버넌스 기구가 설치된 지역은 총 4개 지역이며, 이들은 모두 지역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별도 거버넌스 조직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및 별도 거버넌스 현황

구분	시·도 사보위 사무국 설치 여부	시·도 사보위 외 별도 거버넌스(합기구) 설치 여부
전국	1개 시	3개 시·도
시	1개 시 (세종특별자치시)	2개 시 (서울시, 광주시)
도	-	1개 도 (경기도)

주: 서울시는 서울복지거버넌스, 광주시는 광주복지협치위원회, 경기도는 경기복지거버넌스 운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운영비, 인건비 등) 현황을 파악한 결과 3개 시(서울시, 대전시, 세종시)와 4개 도(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총 7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10개 시·도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았다.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의 지원 예산 규모는 최저 3,000천 원부터 194,950천 원까지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고, 시·도 간 평균 지원 예산액은 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약 9배 높게 나타나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

수가 많지 않아 평균 비교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세종시의 경우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어 지원 예산 규모가 타 시·도보다 월등히 높게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표 3-4〉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 지원 시·도	지원 예산 규모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국	7개 시·도 (17개 시·도 중 41.2%)	3,000	194,950	14,707
시	3개 시 (서울, 대전, 세종)	6,120	194,950	27,134
도	4개 도 (경기, 충북, 전북, 전남)	3,000	14,750	3,661

주: 지원 예산 규모는 예산을 지원하는 시·도만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며, 세종시의 경우 사회복지위원회 사무국 운영을 위한 운영비(4인 인건비 포함) 194,350천 원을 지원하여 타 시·도와 편차가 크게 나타남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정기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정기적으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2개 시·도(강원도, 제주도)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 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시·도의 평균 연간 운영 횟수는 최소 1회에서 최대 23회까지 차이가 났고, 평균 운영 횟수는 5.4회로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운영되고 있었다. 시·도로 구분하여 운영 횟수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 7.6회, 도의 경우는 3.7회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횟수는 약 2배 차이가 났으며, 도 지역보다 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표 3-5〉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정기 운영 현황

(단위: 회)

구분	정기 운영 시도	연간 운영 횟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전국	15개 시·도 (17개 시·도 중 88.2%)	1	23	5.4
시	7개 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2	23	7.6
도	8개 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	11	3.7

주: 연간 운영 횟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정기 운영하는 시·도만을 포함하여 분석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에 대한 담당 공무원들의 평가는 평균 3.4점으로, 시 지역(3.6점) 이 도 지역(3.2점)에 비해 조금 높았다. 특히 시는 절반 이상인 5개 시에서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도는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라고 답하였다. 담당 공무원 개인의 주관적 평가이고 시·도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점수의 단순 비교는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도의 경우 시에 비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표 3-6〉 시·도 사보위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의 구체성, 적절성

(단위: 개, %,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국	1 (5.9)	1 (5.9)	6 (35.3)	8 (47.1)	1 (5.9)	3.4
시	0 (0.0)	1 (12.5)	2 (25.0)	4 (50.0)	1 (12.5)	3.6
도	1 (11.1)	0 (0.0)	4 (44.4)	4 (44.4)	0 (0.0)	3.2

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응답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은 50대 이상(50대 59.7%, 60대 2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이 54.9%로 여성보다 약 10% 많은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시·도 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균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이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식과 전문성의 숙련 정도를 고려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 편으로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3항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위원회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기관 및 단체의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등의 구성이 평균적으로 고령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 미만이 20.6%, 1~2년 미만이 약 10.4%, 2~4년 미만이 51.5%, 4년 이상이 17.5%로 나타났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시·도 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에 따라 지역별 연임 기준에 차이가 나타난다¹⁾. 이를 고려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연임 임기는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까지이나, 연임 임기를 마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임명 또는 위촉될 수도 있다. 현재 조사 결과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2년 미만으로 활동한 비중이 31%, 1회 연임한 비중이 51.5%, 2회 이상 연임한 비중이 17.5%로 분석된다.

사회보장위원의 평균 90.7%는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원

1) ① 위원의 임기 2년,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 :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인천시, 울산시,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기도, ② 위촉위원의 임기 2년, 1회에 한 하여 연임 : 충청남도, 위원의 임기 2년, ③ 위원장은 한 차례 연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두 차례 연임 : 서울시, 위원의 임기 2년, ④ 위원과 위원장은 한차례 연임 : 강원도, ⑤ 임기 표기 없음 : 세종, 대전

의 77.9%는 대표·기관장과 교수로 구성되어 있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도 단위에서 학계, 공급자, 이용자와 주민, 관내 지역의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모두 함께 시·도의 사회보장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음에도 민간위원 구성이 대표, 기관장, 교수에 편중되어 다양성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표 3-7〉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역할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국	시	도
전체		355 (100.0)	161 (100.0)	194 (100.0)
연령	30대	5 (1.4)	3 (1.9)	2 (1.0)
	40대	53 (14.9)	21 (13.0)	32 (16.5)
	50대	212 (59.7)	101 (62.7)	111 (57.2)
	60대 이상	85 (23.9)	36 (22.4)	49 (25.3)
성별	남성	195 (54.9)	88 (54.7)	107 (55.2)
	여성	160 (45.1)	73 (45.3)	87 (44.8)
활동기간	1년 미만	73 (20.6)	39 (24.2)	34 (17.5)
	1년~2년 미만	37 (10.4)	10 (6.2)	27 (13.9)
	2년~4년 미만	183 (51.5)	98 (60.8)	85 (43.8)
	4년 이상	62 (17.5)	14 (8.7)	48 (24.7)
공공·민간구분	민간	322 (90.7)	142 (88.2)	180 (92.8)
	공공(지자체공무원)	26 (7.3)	13 (8.1)	13 (6.7)
	공공(지자체 외 공무원)	7 (2.0)	6 (3.7)	1 (0.5)
민간위원특성	교수	99 (30.7)	43 (30.3)	56 (31.1)
	의원	11 (3.4)	5 (3.5)	6 (3.3)
	대표/기관장	152 (47.2)	69 (48.6)	83 (46.1)
	중간관리자	31 (9.6)	15 (10.6)	16 (8.9)
	실무자	6 (1.9)	2 (1.4)	4 (2.2)
	기타	23 (7.1)	8 (5.6)	15 (8.3)
공공위원특성	단체장·부단체장	3 (9.1)	2 (10.5)	1 (7.1)
	실국과장·센터장	28 (84.8)	15 (78.9)	13 (92.9)
	실무자	1 (3.0)	1 (5.3)	0 (0.0)
	기타	1 (3.0)	1 (5.3)	0 (0.0)

주: 민간위원의 경우, 연구위원 등은 기타에 포함

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2항에 대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담당 공무원이 인식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회보장증진 기여도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여도가 3.9점(시 4.1점, 도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기여 정도가 3.7점(시 3.9점, 도 3.6점)으로 높았으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과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여 정도는 3.3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여 정도는 2.9점(시 3.1점, 도 2.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는 전반적으로 시 지역이 도 지역에 비해 높게 인식되고 있었다.

〈표 3-8〉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단위: 점)

문항	점수		
	전체	시	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9	4.1	3.8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3	3.3	3.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3.3	3.4	3.2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3.7	3.9	3.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9	3.1	2.7

주: 점수는 5점 리커트 척도 응답의 시·도 평균임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으로 판단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 내실성은 시·도 평균 3.7점이며 시 지역 평균 4.0점, 도 지역 평균 3.4점으로 시 지역 공무원이 도 지역 공무원보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내실 있게 역할 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내실성에 있어 시 지역의 75%가 그렇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매우 그렇다 포함), 도 지역의 경우 절반 이상이 보통 이하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의 내실성의 시·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표 3-9〉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 내실성

(단위: 개, %,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국	0 (0.0)	1 (5.9)	6 (35.3)	7 (41.2)	3 (17.6)	3.7
시	0 (0.0)	0 (0.0)	2 (25.0)	4 (50.0)	2 (25.0)	4.0
도	0 (0.0)	1 (11.1)	4 (44.4)	3 (33.3)	1 (11.1)	3.4

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응답임

다.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 협력 현황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력(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한 결과 전국 평균은 3.6점으로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시 지역(3.8점)이 도 지역(3.4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응답 비중을 살펴보면 시·도 모두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담당자 간의 협력(소통) 정도는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8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표 3-10〉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공무원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협력(소통) 정도

(단위: 개, %,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국	0 (0.0)	2 (11.8)	6 (35.3)	6 (35.3)	3 (17.6)	3.6
시	0 (0.0)	0 (0.0)	4 (50.0)	2 (25.0)	2 (25.0)	3.8
도	0 (0.0)	2 (22.2)	2 (22.2)	4 (44.4)	1 (11.1)	3.4

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력(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응답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및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 정도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담당자의 협력(소통) 수준보다 더 낮은 3.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우 협력이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은 시·도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고 시 지역의 경우 매우 협력이 안 되고 있다는 응답도 1개 시에서 확인되었다. 즉, 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 수준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소통) 수준보다 낮았으며,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표 3-1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 협력 정도

(단위: 개, %, 점)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전국	1 (6.3)	2 (12.5)	7 (43.8)	6 (37.5)	0 (0.0)	3.1
시	1 (14.3)	1 (14.3)	3 (42.9)	2 (28.6)	0 (0.0)	2.9
도	0 (0.0)	1 (11.1)	4 (44.4)	4 (44.4)	0 (0.0)	3.3

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응답임. 시·군·구 협의체가 없는 세종시는 분석에서 제외함.

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내용을 7가지로 구분하여 필요 정도를 파악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침(매뉴얼 등) 배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도 지역이 시 지역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필요 정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시 지역과 도 지역의 항목별 필요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 지역은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침(매뉴얼 등)을 배포해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도 지역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의 경우 시 지역에서는 가장 필요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 중 하나이나, 도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필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예산 지원 현황을 파악한 <표 3-4>에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예산 규모의 시·도 간 격차가 9배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도 지역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이 느끼는 예산 지원의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외 주관식으로 응답한 기타 의견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있었는데, 먼저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관이나 관과 함께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하지만 시 사회보장위원회는 자문·심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사무국 등의 상설 조직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사회보장위원회

60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는 법에 따른 심의·자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구성위원들의 논의로만 진행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거버넌스 기구 설치(사무국)가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관련하여 현재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급여법 내의 업무(심의, 평가, 의결 등)만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표 3-1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정도

(단위: 점)

구분	전국	시	도
중앙-시·도 사보위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분담 논의체계 구축	3.8	3.6	4.0
시·도의 권한(역할) 강화를 통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확대	3.8	3.6	4.0
시·도 사보위 시·군·구 지사협의 연계·협력 강화	4.3	4.0	4.6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	3.9	3.8	4.0
시·도사회보장위원회 지원조직 마련	3.8	3.5	4.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4.0	3.5	4.4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침(매뉴얼 등) 배포	4.2	4.3	4.2

마지막으로 향후 기대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및 연계 기능 강화 지원, 시·도의 사무국 설치 또는 간사 배치를 의무화 지원 등이 있었다.

제2절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 FGI 분석

1.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본 절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연합회를 통해 섭외하였으며, 인터뷰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중 본 과제의 취지와 인터뷰에 동의한 총 6명을 대상으로 2022년 5월 19일 한 차례 실시하였다.

〈표 3-13〉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대상

담당자	지역	소속
A	00도	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B	00도	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C	00도	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D	000도	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E	000도	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F	00000시	00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2. 초점집단인터뷰(FGI) 내용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FGI에서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총 2개 대주제를 선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3-14〉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내용

대주제	세부 조사내용
시·도 사보위 운영상 문제점	· 시·군·구 지사협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신 시·도 사보위의 운영상 문제점(한계)은 무엇입니까?
시·도 사보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 시·도 사보위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상 문제점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 부재

인터뷰 참여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기본적인 사회보장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간의 성과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유기적 연계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성은 매우 낮으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교류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 시·도의 시·군·구 지원과 같은 상시적인 논의체계는 구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협의체 그리고 읍면동 단위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법제화는 기본적인

로 지원 체계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제 성과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지만, ... 중앙이라던지 시·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여서 ... 이것이 시·도 역시나 시·군·구를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균형발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상시적인 논의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문제점..”(참여자 D)

그리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먼저 시·도 공무원을 찾아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간담회를 제안하여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업무는 시·도 담당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조차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시·도에서는 시·군·구협의체는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고 보는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11개 시군의 간담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하러 가면 도 담당자는 아니 그걸 왜 여기 와서 얘기하냐... 무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리를 만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참여자 D)

“4기 보장계획 때부터 시하고 정기적으로 정례회의를 해주라 (얘기 해서) 그래서 시에서 광역시·도가 수립하는 계획과 지자체 계획의 연계성을 갖자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 수립하는 동안에는 한 네 번에서 5번 정도 광역 시·도하고 우리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막 요구해야지 해줘요. 근데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런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참여자 F)

또한, 법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직이 아니다 보니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있었다. 그러나 유기적 논의체계를 구축을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참여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군 위원장님들 중에 들어가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인 거죠..”(참여자 D)

“지역사회보장계획이나 이런 거 좀 되게 적극적으로 하시는 팀장님께서 오시면서 협의체에서도 실무적인 측면에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는 시군 사무국장님... 두 명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면서 뭔가 의견을 주고 하기는 하는데, 여기 시·군·구 협의체 위원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연결고리가 있어서 참여하는 형태로 하면 좋지 않을까.”(참여자 E)

“저희는 민간 위원장님들이 올해부터 저희가 5개 구인데 5분이 다 사보위에 참여를 하세요. 2014년도에 연합회를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하면서 그때 시 국장을 만나가지고 지사협 연합회 대표가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줘라라고 해서 2명이 들어갔었어요. 근데 당연직은 아니고...”(참여자 F)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인터뷰 참여자들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가 적으며, 회의도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실질

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조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유사하며 사회보장급여법에 담겨있는 내용 외에는 차별적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사실 저희 00같은 경우는 1년에 회의가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정도밖에 없고요. 그것도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서면. 근데 전에 역사를 보면 전에도 코로나 상황 전에도 웬만하면 서면, 이렇게 된 거예요...그러니까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참여자 E)

“사회보장위원회가 심의나 이런 것들이 보장계획 그리고 자활이나 기초 생활 요거 그냥 몇 가지 조금 더 넣어서 심의만 그때 딱 잠깐 한 두 번 하는 그런 형태로 저희 쪽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참여자 E)

“중앙도 그렇고 시·군·구 단위도 어쨌든 민간 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이 있잖아요. 전달 체제상에 근데 광역은 그게 없어요. 그냥 하나의 그 행정의 위원회 수준의 이제 기능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거버넌스는 조직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하는 게 기준이 정확히 명확하지 않고 행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사보위만 그냥 운영하면 되는 거고.. 회의만 하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참여자 A)

“제가 전국에 사회보장위원회 조례를 다 봤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법에 나와 있는 내용 외에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참여자 F)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운영 근거 부족

지역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을 위한 사무국 설치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리고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5항이 신설(2020.4.7.)됨에 따라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 기준이 모호하고 법률 용어 해석에 있어 시각차가 발생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 시군 협의체처럼 정말 그게(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딱 구성이 되면,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 고유 업무가 있으면 그게 계속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참여자 E)

“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참여자 B)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중앙 단위에서 해석하는 경비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광역 단위 시군, 기초 단위나 지방자치단체에 오면 경비는 수용비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광역 단위에서 이걸로는 조례를 만들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여자 A)

또한, 일부 시·도에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중간 조직으로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를 제안하여 추진했으나,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방식, 직원 배치 등에 대

한 근거(매뉴얼)가 부재하여 결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설치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설치 관련해서 법제화되면서 내부적으로 도랑 논의는 했었어요... 중간 조직체로서 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법제화됐으니 하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사회서비스원에 자리를 하나 놓고 인력 한 명 놓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고, 그리고 우리는 광역시·도면은 그래도 직원이 두세 명 없어도 2~3명 정도는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고 요구하고 별도의 공간, 별도의 예산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작년 우리 지역 역량강화 컨퍼런스 할 때도 지사님께도 건의하고 했는데... 결국에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참여자 E)

“사무국 설치가 처음 언급됐을 때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야기하니까 시에서 이터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구성돼 있다... 사무국은 필요시 만나면 되는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도에) 사무국을 만들라고 하면 실제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임의로 필요할 때 이렇게 설치 운영되는 그런 간사단체의 역할 그 정도로 민간이 모여서 하는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이후로 저희가 그거(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관련해서 사무국은 정확한 매뉴얼이나 지침이 없으면 불가능하겠다고 생각이 돼서 그 이후 단계는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참여자 F)

“담당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근거가 없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뭔가 지역에서 뭔가 이러이런 한 것들이 필요한데 다 근거가 없는 거예요.”(참여자 D)

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확대와 예산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역할과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사보위가 역할을 하는데 법정 업무 자체가 없다고 봐요.... 그나마 하는 게 시·도 지역사회 보장 계획에 관련된 부분인데 계획 관련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맡겨놨다가 4년마다 한 번씩... 제 5기 보장계획이나 사회보장계획할 때 잠깐 한 번 이렇게 오셔서 컨설팅할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수준에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법정 업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참여자 F)

“전제조건이 뭐냐면은 지원이에요. 복지부에서 광역 단위의 사보위 활성화를 위한 어쨌든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근데 그 광역 단위의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광역은 시·군·구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명시적인 부분이 어디에도 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 아쉽고”(참여자 A)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뭔가를 그냥 해결하려고 하는 게 너무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은 인건비랑 정말 최소한의 운영비만 있어도 돌아가는 구조인데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걸로

해결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지 않나” (참여자 E)

“ 인력이라든가 예산 지원이 된다고 봐요. 이거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뿔 해도 안 된다고..” (참여자 F)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체계 개편

시·군·구 대표협의체도 매 월 회의를 진행하지 않지만,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은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상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 사회보장위원회가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체계를 갖고 있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를 갖는 것과 같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실행을 도울 수 있는 구성체계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 시·군·구 대표협의체 역시 매달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상하반기에 한 번 정도 하는 곳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거기서도 분기에 한 번씩 만나서 지역의 사회보장에 관한 논의를 어느 정도 질적으로 접근하겠어요. 다만 그것이 이제 커버가 되는 이유가 분과가 운영되고 있고 또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대표협의체 올라가기 전에 그런 논의들이 현장에서 이미 한 번 걸러지고 가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광역 단위에도 그러한 형태의 실무 전문가 분야의 어떤 협의 단계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것이고...”(참여자 d)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이 안 되는 이유는 저는 실행 체계가 없다고 봐요. 개별 사무국뿐만 아니라 장들 급만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하지 실행 체계로서 모형을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실행체계를 할 수 있도록... (시·도 사회보위)의 실무협의회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실무자들이 참여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참여자 F)

“지자체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광역 단위의 이름을 사회보장위원회로 간 거예요. 사회보장위원회를 갔으면 그 밑에 조직도 중앙과 같이 실무협의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하거끔 했어야하는데, 시행규칙에는 그런 내용을 못 담아내는 부분이 있죠.”(참여자 A)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와 운영지침 마련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확장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담 조직과 운영 지침(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면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지원하는 사무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참여자 B)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은 사실 그제(사무국) 있으면 어쨌든 운영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됐다고 하면 나머지 시·군·구와의 연계 협력이라든가 교육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광역 단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세부 지침이 마련이 되면 그것도 이제 그 지침에 의해서 다 잘 돌아갈 수 있게”(참여자 E)

“시·군·구 지사협의 운영 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인원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결국 조직이 활성화되고 안 하고의 여부는 전담 인력과 근거이고, 전담 인력이 만들어지면 그 근거를 세울 수 있는 작업들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죠.”(참여자 D)

“어떻게든 매뉴얼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어떻게든 아주 약하게라도 매뉴얼에..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고..”(참여자 F)

그리고 현재 별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지금 00도 그렇고 000도 00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별도의 조직체로서의 사무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그 사무국을 운영하는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도와 시군과 읍면동에 같이 맞물려서 가려면 애네들(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시군을 지원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들까지도 좀 부여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좀 들고 있고요”(참여자 B)

“저희 시군 협의체도 지금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국 설치하고 직원 2명씩 이렇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광역 단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고 가야 그 많은 ... 시·군·구를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참여자 E)

“(00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잘 조직화되어 있나? 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단절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느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00거버넌스 사무국 네트워크 회의에서만 열심히 움직였을 뿐이지 다른 조직체하고의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찾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시군하고 읍면동하고 이게 쪽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것들의 연결도 이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별도 사무국) 것들이 좀 필요하다”(참여자 B)

다. 분석결과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 결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은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 부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운영 근거 부

족의 총 3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 지원방안으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확대와 예산지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체계 개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조직 설치와 운영지침 마련 총 3가지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상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표 3-15>와 같다.

<표 3-15>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 분석결과

대주제	하위주제
시·도 사보위 운영상 문제점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 부재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운영 근거 부족
시·도 사보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확대와 예산지원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체계 개편 3)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설치와 운영지침 마련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4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 4 장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시·도의 지역사회보장 거버넌스 체제 개편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협력(소통) 정도는 시·도 모두 보통 이하라는 응답이 거의 절반가량으로 나타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도 담당자 간의 협력(소통) 정도는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인식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 수준은 담당 공무원과의 협력(소통) 수준보다 낮았으며, 보통 이하 수준으로 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있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 지원에 대한 필요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 터뷰(FGI)에서도 법에 근거하여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적인 사회보장 거버넌스를 만든 점은 그간의 성과이나,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지역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유기적 연계성은 거의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특히,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관계성은 매우 낮으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교류도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로 인해 시·도의 시·군·구 지원과 같은 상시적인 논의체계는 구축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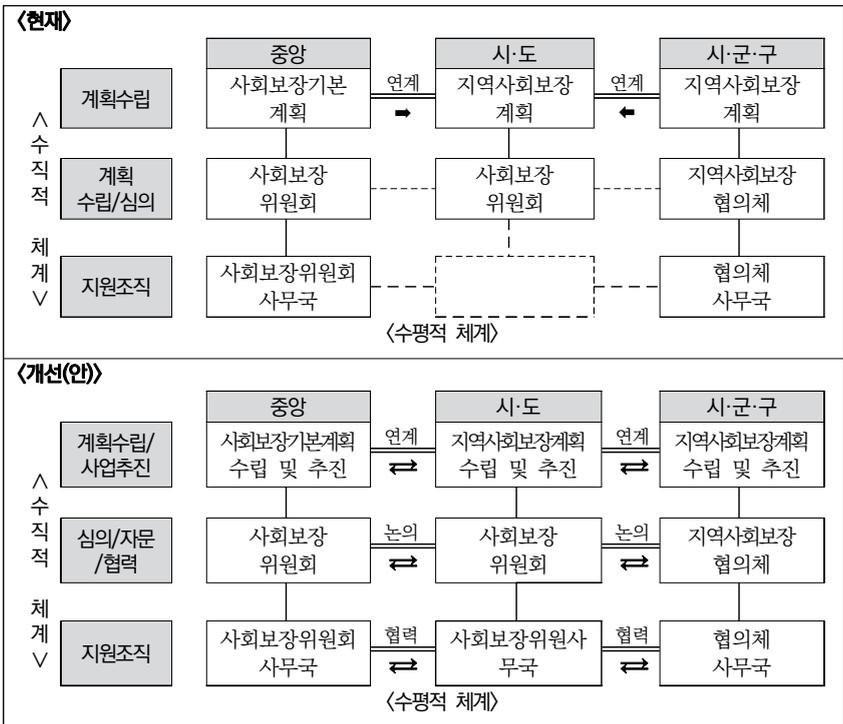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유기적 논의체계가 부재한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 시·도,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4-1>과 같다.

그리고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수직적 체계에 있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 조직 보완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확장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담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인터뷰 결과와 사회보장위원회는 법에 따른 심의·자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회보장위원회의 논의로만 진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거버넌스 기구 설치(사무국)가 효율적이라는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에 근거한다. 물론, 전국 4개 시·도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 또는 별도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종시는 읍·면·동으로 구성된 광역자치단체로 세종시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유사하다. 그리고 별도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만을 지원하거나 긴밀하게 소통·협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이 거버넌스 조직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별도의 사무공간을 마련하여 독립적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중앙과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성 및 연계성을 강화하고 협업 및 소통을 위한 논의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즉, 중앙-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분절과 관련 주체별로 수직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거버넌스를 개선하여,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수평적인 연계, 논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

해 사회보장기본계획과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계가 강화되고, 사회보장 제도의 신설·변경 협의조정, 사회보장 증진에 있어 중앙과 지자체 역할 분담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명칭이 달라 역할이 다르게 인식되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을 ‘위원회’ 또는 ‘협의체’로 일원화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4-1〉 중앙, 시·도, 시·군·구 사회보장 관련 주체 간 거버넌스 개편(안)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능·역할 개선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평균 회의 운영 횟수는 5.4회로 약 2개월에 한 번 정도 운영되었다. 또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7개 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고, 10개 시·도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가 적고, 회의도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인터뷰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인터뷰 결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역할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 제 2장에서도 사회보장에서의 광역 지자체의 기능과 역할 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은 민관협력의 구심점 측면을 고려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표 4-2>과 같다. 즉, 현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는 개괄적 기능과 역할에서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하위 직무에 관한 분석과 정리가 필요하며, 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같이 매뉴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선결되어야 할 것은 앞서 제안한 바와 같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기능을 위원회로 가져갈 것인지 협의체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와 이를 통한 명칭의 일원화일 것이다.

〈표 4-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기능	역할
협력적 연결망 구축과 협업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연결망 형성 및 협력관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진단과 협의 • 사회보장 영역별, 지역별 의견 수렴 및 시·도 사업반영 • 시·도단위 사회보장 의제 설정과 협력적 대응 활성화
지역 욕구 진단 및 지역 간 조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회보장 욕구 파악 및 수요 진단 • 기초 지자체간 사회보장사업 연계·협력과 조정 • 시·도 단위 사회보장사업 개발과 욕구 대응 • 인접 시·도간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연계·협력 촉진
기초 지자체 전달체계 지원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단위 민관 전달체계간 연계체계 구축 • 기초 지자체 사업과 인력에 대한 전문성 지원 • 시·도 단위 사회보장영역간 공동협력사업 활성화 • 시·도 단위 지역사회 자원개발과 지역 간 공유

3.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개선

(1) 구성체계와 지원조직 개편을 위한 관계 법령 재검토

〈표 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체인 중앙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운영하는 근거법이 다르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에 있어 구성체계와 지원조직에 대한 근거가 차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1항에는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제20조1항에 의하여 사회보장기본계획 등 중앙정부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제21조6항에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8항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

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40조5항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제41조4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5항에서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제41조5항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매뉴얼을 발간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 사회보장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실무위원회-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보건복지부에 두고 있고,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군·구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나 지원조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업무수행에 있어 중앙

-시·도-시·군·구의 연계·협력의 한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5항에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비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함에 따라 조직이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지자체 공통 의견이다. 또한, 중앙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대표협의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실무위원회 실무협의체 등 분과가 상시 운영되고 그 과정에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이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실행을 도울 수 있는 운영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 재검토가 요구된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5항의 운영비 등 경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을 제42조5항과 같이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한다면, 법령 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보장급여법」에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당연직이 아니다 보니 지역 여건에 따라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참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적 논의체계를 구축을 위해서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가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2)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매뉴얼 발간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해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매뉴얼을 발간 배포하고 있다. 매뉴얼의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

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등으로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과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안내 매뉴얼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담당 공무원 조사 결과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있어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침(매뉴얼 등) 배포에 대한 욕구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초점집단인터뷰(FGI)에서도 현재 시·군·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확장되고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전담 조직과 운영 지침(매뉴얼)이 있었기 때문이며,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매뉴얼 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관련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매뉴얼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표 4-3〉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

구분	사회보장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속	국무총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구성 체계 (근거)	중앙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6항)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1항)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2항 및 5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6조5항)
지원 조직 (근거)	보건복지부 사무국 설치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8항)	사회보장위원회 운영비 등 경비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5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5항)
운영 매뉴얼 (발간처)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중앙의 사회보장기본계획, 사회보장재정추계, 사회보장통계,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련 사항,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에 관한 사항 등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련 사항,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자료: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2021). 20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의 내용을 검토하여 연구자가 정리함.





- 강윤희. (2000). 정부간 정책선택의 차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사회복지 지출 비교분석. 한국행정학보. 34(3): 353-370.
- 강인성. (2007). 협력적 행정서비스 전달을 위한 광역행정체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고제이. (201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회보장 책임배분 틀의 재정립 방향. 보건복지포럼 205. 52-68
- 권자경, 김익식. (2012). 지방자치단체간 공공서비스 시설 공동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간 성공사례 분석을 토대로. 지방정부연구. 16(1). 23-46.
- 금창호, 박기관. (2012). 우리나라 지방분권을 위한 기능배분 평가와 과제. 한국정책연구. 12(2). 61-77.
- 김병국, 금창호, 권오철. (1998).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 - 지방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편대안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보영. (2021). 복지분권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역량의 과제: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28(1). 65-102.
- 김보영. (2013).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업에 대한 이론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107-132.
- 김정호. (2009).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1(3). 267-285.
- 김종진.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쟁점과 과제.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3(2). 35-52.
- 김창기. (2007).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을 통한 지역복지협의체의 의미와 역할.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2. 175-192
- 김희성, 류진아, 오욱찬, 채현탁, 황정윤. (2020). 복지 부분의 민관 협력 성과와 혁신 연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찬섭. (2016). 유사·중복 복지사업정비 담론의 변천과 사회보장전략에의 함의. 비판사회정책. (50). 126-164.
- 박병현. (2006).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행정학. 8(2). 1-31.
- 박선희, 김수영. (20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거버넌스에 사회적 자본이 미치는 영향. 지방정부연구, 21(2), 153-179.
- 보건복지부. (2021). 202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안성호. (2010). 한국의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방향: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지방정부연구. 14(1). 7-35.
- 안영훈. (2009). 우리나라 사무구분 체계 개선방안 연구. 지방정부연구. 13(1). 149-171.
- 유재원. (2002). 지방자치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6(2). 199-138.
- 이기우. (2009)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 제도와 경제, 3:1, 113-147.
- 이재완. (2016).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조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83-112.
- 이태수, 남기철, 김형용. (2019).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3). 63-92.
- 이찬진. (2017). 지방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 박근혜 정부, 지방사회보장사업 정비하여 복지축소. 월간 복지동향. (220). 40-47.
- 임현중, 김남철. (20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수단으로서의 사전협의제도. 지방자치법연구, 21(3), 389-421.
- 정홍원, 류진아, 강희정, 김태완, 배재용, 정해식, ... & 노현주. (2021). 회복과 도약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의료 개혁과제와 정책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민호. (2019).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구 경향에 대한 분석과 고찰.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32. 79-114.

- 조성규. (2013).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법연구. 39(13). 4-38.
- 주운현, 임정빈. (2021). 광역-기초지방자치 간 사무이양배분원칙의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5(2). 183-201.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방안 연구. 서울: 자치분권위원회.
- 최향순. (2020).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현황과 과제. 공공정책. 3월호. 58-60.
- 한부영, 박재희. (200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함철호. (2015). 지역사회복지거버넌스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발전방안.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4. 213-243.
- 허훈, 강인호(2009).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전문가의견조사와 바람직한 추진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2) 29-55.
- 홍석한. (2020).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 협의·조정 제도에 대한 고찰. 사회법연구, (40), 1-34.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a).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36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B%B2%95#j40:0>에서 2022.07.05.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b).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25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B%B2%95#liBgcolor2>에서 2022.07.05. 인출.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c). 사회보장기본법, 법률 제18215호.

90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2%AC%ED%9A%8C%EB%B3%B4%EC%9E%A5%EA%B8%89%EC%97%AC%EB%B2%95#liBgcolor0>에서 2022.07.05.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d).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191호.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075&ancYd=19700101&ancNo=02191&efYd=197004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에서 2022.07.05.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e).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에서 2022.07.1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f). 지방자치법, 법률 제18661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liBgcolor2>에서 2022.07.1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f). 지방자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294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undefined>에서 2022.07.11.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g).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97호.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undefined>에서 2022.07.11. 인출.



[부록 1]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사전점검 체크리스트

시도	00시도	담당부서	담당과 담당팀명
담당자	000	연락처	실무자 연락처 (휴대전화/전자우편) 필수 기재

1] 계획수립 및 추진 기반 점검 컨설팅 반영

점검항목	자체 점검 (자자체 작성)
- 2022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방식	<input type="checkbox"/> 시도자체 <input type="checkbox"/> 외부용역 <input type="checkbox"/> 개편문 <input type="checkbox"/> 기타
- 담당 공무원 직급 및 직렬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 <input type="checkbox"/> 행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급)
- 담당 공무원의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 수행 경력	___년 ___개월 (___년 ___월부터 담당)
- 담당 공무원의 전체 업무 중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련 업무 비중(주관적으로 응답)	전체 업무 100% 중 (___ %)

2] 계획수립 및 집행 점검

점검항목	자체 점검 및 실적/의견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계획서 위치(쪽)
· 계획수립 내용의 합리성 및 사업구성의 체계성		
- 목표-추진전략-중점추진사업-세부사업 구성은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세부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시·도 자체사업으로 구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22년 계획 수립시 국고사업 제외 완료 0쪽

92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 세부사업 중 신설 및 폐지, 변경한 사업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건 해당	0쪽
- 세부사업의 신설 및 폐지, 변경할 경우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전 심의완료	0쪽
- 사업의 신설·변경·폐지 사유가 지역 여건 및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제도를 숙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사업의 신설변경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건 해당	0쪽
-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조정” 사유 발생 시 해당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절차 준수	0쪽
· 성과지표와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도			
-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점검하기 위한 자체 진단을 수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과지표 전문가 자문 여부	0쪽
· 계획수립의 적절성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2022년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 사항을 구체적으로 도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체계와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제4기 계획 및 관련 중장기 계획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전년도 모니터링(이행점검, 결과확인) 결과를 당해 계획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도 사보위 및 주민의견, 지자체 시책 등 지역 현안을 계획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지역사회보장여건(수요 및 공급) 변화를 분석하고, 당해 계획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계획수립 체계(TF)의 적절성			

- 계획 수립을 위한 체계(TF)를 구성·운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TF회의 0회 실시	0쪽
- 계획수립 TF팀은 담당 부서 외 유관부서 담당자를 포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개 부서 0명 참여	0쪽
- 계획수립 TF팀은 전문가, 시도사보위, 지역주민 등 다양한 참여주체로 구성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전문가 0명, 시도사보위 0명, 지역주민 0명 등	0쪽
- 계획수립 TF 구성시 참여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계획수립 TF 운영 및 논의 결과를 계획수립 과정에서 적절히 반영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계획수립 절차의 타당성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0년 0월 00일 제출	0쪽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수립 절차를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보위 심의: 00년 0월 00일 의회보고: 00년 0월 00일	0쪽
-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시 절차(계획수립과 동일)를 준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보위 심의: 00년 0월 00일 의회보고: 00년 0월 00일	0쪽
· 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 이행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운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개 분과 모니터링단 회의 0회 실시	0쪽
- 모니터링 인력은 객관적·전문적 관점의 모니터링 수행에 적합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전문가 0명, 자문인력 0명	0쪽
- 모니터링 체계 구성시 참여주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모니터링 주관점, 방법, 실시 주기 등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연차별 시행계획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이행점검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방안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체계구성의 타당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연차별 시행계획 결과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할 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이행점검 모니터링 체계와의 차별성	0쪽
- 모니터링 인력은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할 계획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전문가 0명, 자문인력 0명	0쪽
- 모니터링 주관점, 방법, 실시 주기 등 추진계획을 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94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 결과확인(자체평가) 모니터링 결과의 환류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재정·행정·입법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		
- 재정지원 및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현황진단을 통해 조직 및 인력 운용 관리 개선 계획을 적절하게 도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사회복지급여 제공 및 관리 개선 계획(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부정수급방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계획의 실행과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개정 계획이 타당하고 구체적인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관할 시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시도의 지원(인적 안전망 확충 및 운영 계획)은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관할 시군구의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확충을 위한 시도의 지원방안(포상, 교육, 자체 홍보, 활동 지원 등)을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 0회 포상 0명
- 사회복지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대표성과 및 우수 사업의 선정의 타당성		
-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를 적절히 반영한 대표성과를 도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우수사업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선정기준 마련
- 우수사업은 지역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주민 참여 활성화 및 민관협력 체계구축 계획의 구체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점검 및 성과 공유를 위한 다양한 주민참여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온라인 공청회 주민 계획수립단 구성, 모니터링단 공개모집 등
- 주민 참여방법 다각화 및 의견수렴 확대 등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개선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민관협력 참여주체는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참여주체 기재	0쪽
-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개선 계획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3 시·도의 시·군·구 지원 체계 점검

점검항목	자체 점검 및 실적/의견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계획서 위치(쪽)	
· 시·군·구 격차진단 및 균형발전 지원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 객관적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시·군·구 간 사회보장 격차를 진단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군·구 요구사항 확인 자원 및 인프라 격차 진단 수요-공급 여건 분석 등	0쪽
- 시·군·구 격차진단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목표 및 전략을 설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지원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군·구(또는 권역별) 격차 해소 방안, 관련 재정 지원 계획	0쪽
- 시·군·구 균형발전 지원 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의 점검의 체계성 및 충실성			
- 시·군·구 계획의 수립절차와 내용을 점검하고, 조정·권고 역할을 수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계획점검, 조정권고 완료	0쪽
- 조정·권고 사항의 시·군·구 반영결과를 점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반영결과 점검 완료	0쪽
- 시·군·구 계획 수립·시행 점검과 조정·권고가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이루어졌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체계			
- 시·군·구 평가를 위한 별도의 평가체계(담당 공무원 외)를 구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평가단 구성 예정	0쪽
-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평가체계에 포괄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외부 전문가 0명 참여 예정	0쪽
- 평가 시기, 평가 지표, 평가 방법 등 평가계획이 구체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96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적이고 체계적인가?			
- 평가결과 활용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군·구 역량강화 지원 체계			
- 시·군·구 컨설팅을 위한 시·도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내용	0쪽
- 시·군·구 컨설팅을 위한 시·도 자체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내용	0쪽
- 시·군·구 지원을 위한 시·도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내용	0쪽
- 교육, 컨설팅 외 시군구 시·도 자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지원 내용 및 방법	0쪽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주요 지원 내용 및 방법	0쪽

④ 지역사회보장 통계 관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활용

점검항목	자체 점검 및 실적/의견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계획서 위치(쪽)
-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성과관리(성과지표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성과관리 지표 0개 현황진단시 활용
- 지역사회보장 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지표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지역사회보장지표 외 별도의 지역사회보장 통계를 자체 생산·관리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0개 지표 자체 생산관리

⑤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활성화 및 참여도

점검항목	자체 점검 및 실적/의견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계획서 위치(쪽)
-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시기는 언제인가?		0000년 00월 00일
-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사무국 설치시기: 00년 0월 예산지원액: 00천원
-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운영비, 인건비 등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21년 00천원 2022년 00천원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2021년 0회 2022년 6월 현재 0회	0쪽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자문 역할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시·도 사회보장 증진 기여 정도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가 시·도의 사회보장 증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여정도(아래 5개 문항에 응답) ① 전혀 기여하고 있지 않다 ② 기여하고 있지 않다 ③ 보통 ④ 기여하고 있다 ⑤ 매우 기여하고 있다		기여 비중 (합계 100%)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
-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한 중요 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정도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강화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	필요정도(아래 7개 문항에 응답)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우선 순위 (7순위까지)
- 중앙·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연계·협력을 통한 국가와 지자체 역할분담 논의체계 구축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시·도의 권한(역할) 강화를 통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역할 확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계·협력 강화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지원조직 마련(ex. 사무국, 전담인력)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 중앙 차원의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지침(매뉴얼 등) 배포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98 지역사회보장 기반강화를 위한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운영현황 분석과 과제

· 기타	자유기입	
-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담당자와 시·도사회보장위원회의 협력(소통)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와 시·군·구 협의체의 협력(지원)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① <input type="checkbox"/> ② <input type="checkbox"/> ③ <input type="checkbox"/> ④ <input type="checkbox"/> ⑤	0쪽
-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외에 별도의 거버넌스(협기기구)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명칭기입(설치연도) ※ 운영현황 별도첨부
- 향후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역할로 부여되었으면 하는 점	자유기입	

6 기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관련 의견

-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내용 기재